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검 토 보 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5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Ⅱ.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Ⅲ. 검토의견	3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3
2. 제정안의 조문 체계	9
3. 조문별 검토의견	10
1) 목적(안 제1조)	10
2) 법인격, 설립, 사무소 및 민법 준용(안 제2조~제4조 및 제21조) ...	11
3) 정관 및 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12
4) 임원, 이사회, 원장 및 직원의 임면(안 제7조~9조)	14
5) 채원 및 출연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안 제12조~제14조)	15
6)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보고 (안 제15조~제17조)	17
7)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18조)	18
8) 비밀누설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안 제19조 및 제23조, 제20조 및 제24조)	19
9) 공무원 의제(안 제22조)	20
10) 부칙(시행일 및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21
※ 참고자료	
1.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규정	23
2.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주요 기관 현황	2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허성무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2024. 9. 23.
3. 회부연월일: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 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 마.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하고,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 우리 정부는 최근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수출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후 루마니아에 신궁, 페루에 함정, 호주에 장갑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과 방산품목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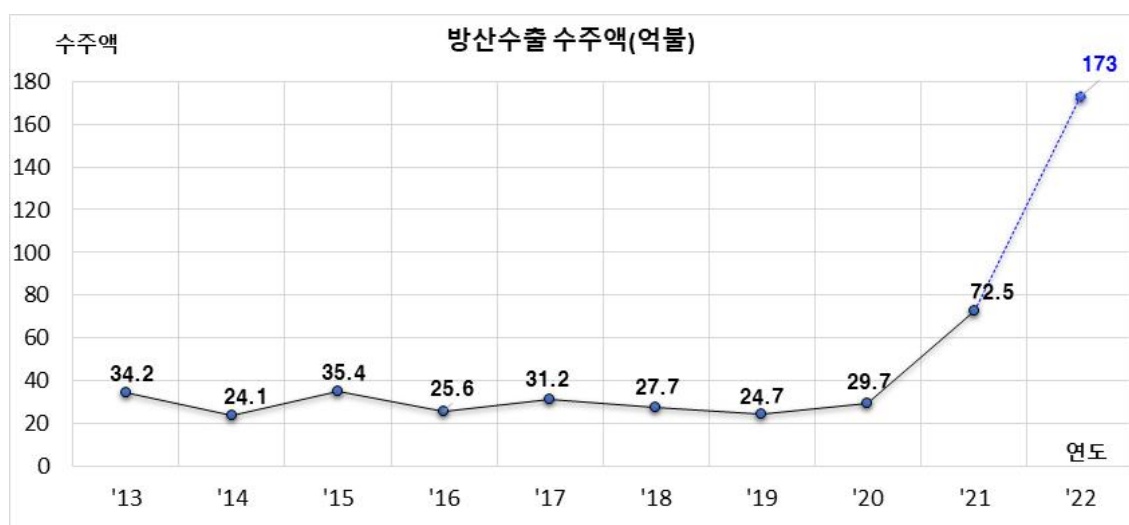
계약연도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계약금액
2021	인도네시아	T-50	2.4억불
	필리핀	초계함	5억불
2022	필리핀	원해경비함	5.7억불
	폴란드	K2 전차(1차)	33.6억불
	폴란드	K9 자주포(1차)	24.0억불
	폴란드	천무(1차)	35.5억불
	폴란드	FA-50	30.2억불
2023	말레이시아	FA-50	9.2억불
	튀르키예	전차 부품	2.9억불
	루마니아	신궁	-
	호주	레드백 장갑차	25.0억불
	폴란드	K9 자주포(2차)	26.7억불

계약연도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계약금액
2024	폴란드	천무(2차)	16.4억불
	페루	함정 건조	4.7억불
	앙골라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	0.1억불
	루마니아	K9자주포	10억불
	미국	지원함 정비사업	-

*자료: 방위사업청

또한, 최근 10년간 방산수출 현황을 보면, 2013년 34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수출 수주액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향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 자료: 국방부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중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이 법률안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에서의 진흥원의 주된 사업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지원’인데, 현행 방위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중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기능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방산진흥원 사업 비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한국방산진흥원 (안 제6조)
1. 방위산업 발전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1.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2.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 관리	3.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4.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5. 방위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한국방산진흥원 (안 제6조)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1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¹⁾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별도의 신설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현재 ‘방위산업기술 기획,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을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²⁾는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능상 독립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면서 인원과 조직이 확대(21년 497명→24년 644명)되고 예산이 대폭 증액(21년 3,515억→24년 9,259억)되었음.³⁾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또한, 방산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이 진흥회의 주요 업무는 방위산업 정책 및 육성 지원,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방위산업 수출마케팅 지원, 방위산업 정책연구, 방위산업 실태조사 등으로서 역시 민간영역에서 주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 및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⁴⁾에

3) ○ (인원) 2021년 1,021명에서 국방기술품질원 649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72명으로 분리
 - 정규인력은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36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간제 인력은 2021년 125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대폭 증가

구 분	'21년 1월	'22년	'23년	'24년 11월
총원(A+B)	497	556	601	644
정규인력 정원 (A)	372	378	372	367
기간제 인력 편성 (B)	125	178	229	277

○ (예산) 2021년 총 3,515억원에서 2024년 9,259억원으로 증가

(단위: 100만원)

예산 구분	'21년(결산)	'22년(결산)	'23년(결산)	'24년(예산)
총 출연금 예산	351,565	712,802	1,041,638	925,910
기관 고유사업	50,233	70,304	57,115	59,576
방사청 위탁	299,761	639,714	981,156	861,674
국방부 위탁	1,571	2,784	3,367	4,659

* 자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 기획재정부는 22년 12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공공

부합하지 않고, 기존 출연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민간기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기관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며, 정부 출연기관 신설에 따른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려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2024년 8월 27일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⁵⁾ 이와는 별개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 상정 및 심사⁶⁾를 앞두고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현행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장기계획에 따른 유사기관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관 정원을 12,442명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관별 혁신계획을 마련하였음.

국방기술품질원은 조직통합 및 대부서화를 위하여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5) 동 개정안은 2024년 6월 25일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41호) 하였음. 주요내용은 부품개발·성능시험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여 “1. 부품개발, 2.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3.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4. 9. 13.	2024. 9. 20.
회부일	2024. 9. 19.	2024. 9. 23.

기획재정부도 유사한 취지에서 현행 출연기관 간 기능중복 문제, 공공기관 혁신 등 최근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한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기능 확대 등을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이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현행 출연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위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진흥원 설립 필요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검토함.

2. 제정안의 조문 체계

- 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총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 조문 체계]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제3조 설립
제4조 사무소
제5조 정관
제6조 사업
제7조 임원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이사회
제10조 원장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2조 채용
제13조 출연금
제1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7조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8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민법의 준용
제22조 공무원 의제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안 제1조)

- ☐ 제정안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격, 설립, 사무소 및 민법 준용(안 제2조~제4조 및 제21조)

□ 제정안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법적 형태를 법인으로 하고, 설립 등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유사 규정인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다른 출연기관의 설립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4조제2항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을 설치하게 되면 조직 및 인력의 확대로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제 정 안
제2조(법인격)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정관 및 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 제정안에서의 정관 기재사항은 민법 및 법인 설립 특별법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진흥원의 사업 내용은 기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연구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업무와 중복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 협력 사업
2.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4.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방위산업 정보 및 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임원, 이사회, 원장 및 직원의 임면(안 제7조~9조)

- 제정안에서의 임원, 임직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원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법인 설립 특별법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정 안

10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5) 재원 및 출연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안 제12조~제14조)

□ 제정안에서는 진흥원의 재원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업무 지원 및 국가사무 수탁사무에의 전념을 꾀하는 점에 비추어 ‘정부 외의 출연금’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7조⁷⁾에서도 국가의 부담을 자치단체에 넘겨

서는 아니 되며,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사업은 지방자치사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는 다른 기관·단체·주민·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⁸⁾

제 정 안
제12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제13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 7)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8) 행전안전부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제 정 안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6)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안 제15조~제17조)

□ 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계획 집행실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법인의 설립법⁹⁾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9)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 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 정 안
제15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원장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7)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18조)

- ☐ 제정안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8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근거법인 「국방과학연구소법」과 「방위사업법」에는 국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비밀누설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안 제19조 및 제23조, 제20조 및 제24조)

- 제정안은 진흥원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다른 법인 등이 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다른 특수법인의 설립법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¹⁰⁾

10) 「국방과학연구소법」 제6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연구소가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비밀 엄수)연구소의 임직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못한다. 제22조(벌칙)제15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9.>

제23조(과태료)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 정 안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9) 공무원 의제(안 제22조)

□ 제정안은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으로써 진흥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운동과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¹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심리가 진행 중¹²⁾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정치 운동을 허용하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대한 개정안¹³⁾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중이므로 동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과 국회심사 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22조(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0) 부칙: 시행일 및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제정안은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따른 준비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12) 헌법재판소 2023. 5. 19. 접수 2023헌가16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위헌제청

13)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0일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심사중임.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위사업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진흥원의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한다.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 규정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개정 2014. 5. 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2. 4., 2020. 3. 31., 2023. 6. 20.>

1. - 4. 삭제<2020. 3. 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3.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4.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5. 민간개발 장비·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성능시험 지원
6.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7.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8. 컨설팅 및 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9.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11.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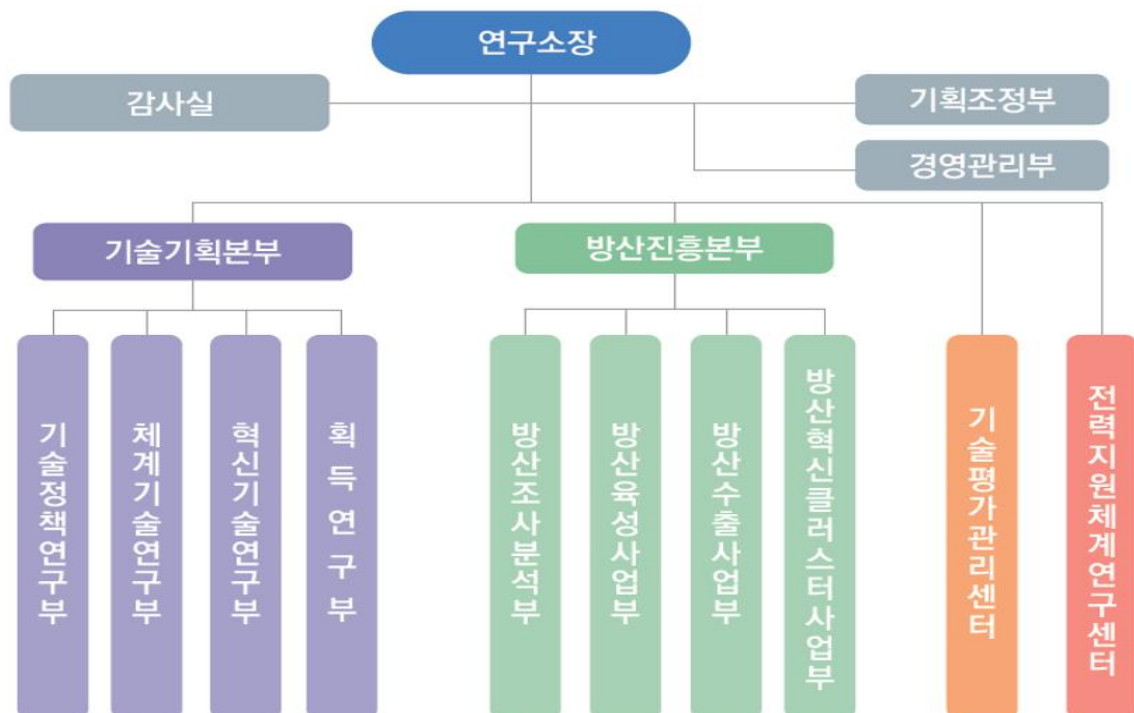
2.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 주요 기관 현황

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요업무

- (기술기획)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관리 전담
- (방위산업지원)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지원사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 (기술평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성과 및 성공여부를 점검
- (전력지원체계 연구)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사업관리와 품질보증업무 수행

○ 조직도



나. 국내 방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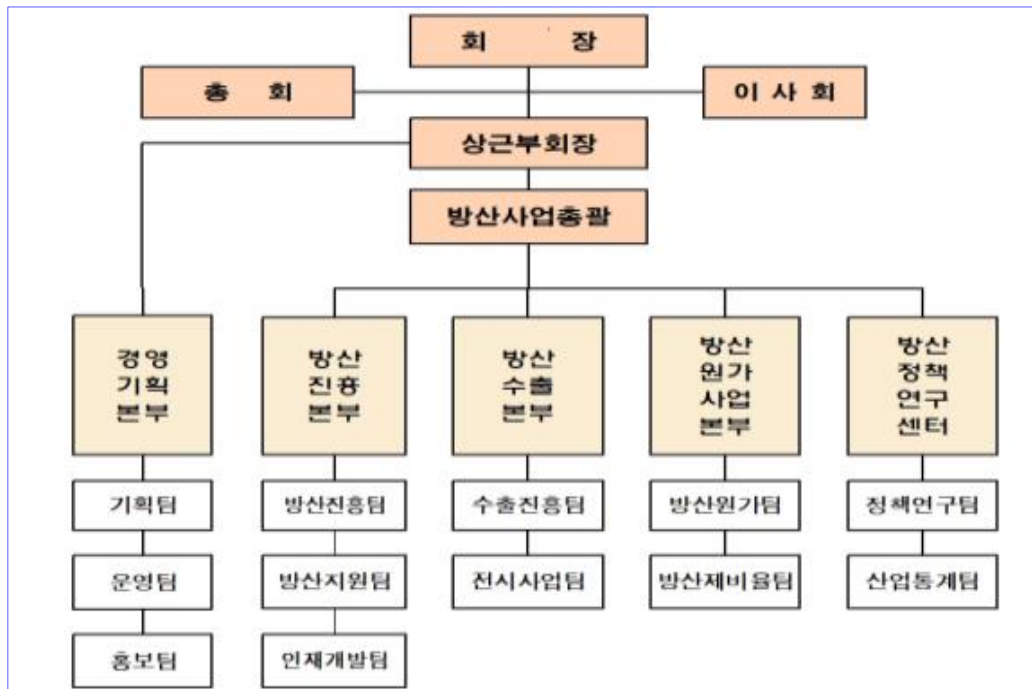
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설립목적

- 방위산업관련 조사·연구,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

* 회원사(방산업체 및 방산유관업체) 간 네트워크 구성 등

○ 조직도



○ 주요사업

- (방산진흥본부) 체계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지원 등
- (방산수출본부) 수출 마케팅, 전시회 지원 등
- (정책연구센터) 방위산업 통계, 정책연구 수행 등

○ 주요연혁

- '76.3월 : 한국군수산업진흥회 창립
- '79.4월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명칭 변경
- '06.3월 : 방위사업청 법인설립 허가
- '24.현재 : 제18기 임원진 구성 및 운영

○ 일반현황

- 회장 :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 회원사 : 703개사(정회원 : 81개, 준회원 622개)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상근인력 : 56명(상근부회장 최병로)

2)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 설립목적

- 방산중소벤처기업체의 상호교류 및 중소기업 방위산업 육성 등

○ 주요사업

- 중소기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 방위산업 분야 학술지 발간,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 수출촉진, 경쟁력 향상, 네트워크 구축 등

○ 주요연혁

- '20.6월 : 설립허가(제1대 회장 연합정밀 김용수 대표)
- '20.6월 ~ '23년 : 코로나 및 제1대 회장 사임으로 협회 활동 제약
- '24.1월 : 제2대 회장 네비웍스 대표 취임 및 협회사무실 이전
- '24.9월 : 국회 대토론회(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개최

○ 일반현황

- 회장 : 원준희 (네비웍스 대표)
- 회원사 : 25개사
-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 상근인력 : 1명(윤웅중 전무)

* 네비웍스 임직원 2명 사무 지원 중이며, 상근조직 확대 중